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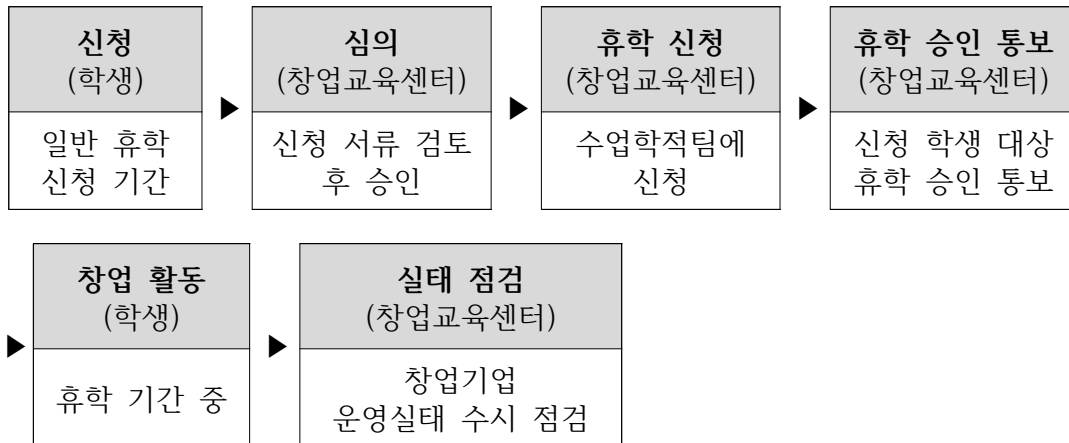
## 대구가톨릭대학교 「창업휴학제」 안내

우리 대학은 학생 창업을 장려하고 창업으로 인한 학업 단절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 기간 창업을 위한 휴학을 인정하는 ‘창업휴학제’를 운영하고 있습니다.

### 1. 개요

인정대상	창업휴학 신청시점 기준 1개월 이전에 창업을 한 사업자등록증상의 대표 및 공동대표
휴학 기간	1회 1년, 최대 2년(4학기)

### 2. 진행 절차



### 3. 세부 사항

가. 창업휴학은 학업과의 연계성을 위해 학생의 전공(복수전공 포함)과 관련된 분야만 인정하며, 창업교육센터가 지정한 제외 대상 업종은 인정하지 않습니다. 창업휴학 승인 여부는 창업교육운영위원회가 심의하여 결정합니다.

\* 제외 대상 업종

: 금융 및 부동산(K64-66), 부동산업(L68), 숙박 및 음식점업(I55-56), 무도장 운영업(91291),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(9112), 기타 갬블링 및 배팅업(9124), 기타 개인 서비스업(96), 그 밖에 제조업이 아닌 업종으로서 산업부령으로 정하는 업종

나. 창업교육센터는 신청서 심의 및 창업 활동 여부 확인을 위해 현장점검을 정기, 수시로 실시합니다. 이때 창업기업은 창업교육센터의 현장점검 및 실태조사에 적극 협조해야 합니다.

다. 2년 연속으로 창업휴학을 신청할 경우 일반휴학 신청기간에 재신청해야 합니다.

#### 4. 신청

가. 신청서류

- 창업휴학원서(13호 서식, 본인·보호자·지도교수 날인 필수)
- 사업자등록증
- 사업계획서(12호 서식)

나. 제출방법 : 창업교육센터에 신청서류 직접 제출

다. 제출기한 : **2024. 2. 29(목)까지** (일반휴학 신청기간과 동일)

#### 5. 제출 및 문의처

: 창업교육센터 053-850-2680 / 산학협력관(B8) 102호